

電子商去來의 租稅政策的 含意

1997. 4.

鄭 暎 憲 譯
沈 在 珍

KIPF 한국조세연구원

차 례

요 약	5
1. 서론	7
2. 초고속정보망의 개요	10
가. 초고속정보망	10
나. 기술의 집중	10
다. 인터넷의 발전은 통신혁명의 일부분	11
라. 인터넷	12
3.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과 전자상거래	14
가. 배경	14
나. 전자상거래	16
4. 보안 및 암호	22
가. 오픈 시스템	22
나. 공용암호	22
5. 결제방법	25
가. 개요	25
나. 전자대차	26
다. 전자화폐	27
라. 전자화폐의 구분	28
마. 발행인의 신원	28
바. 발행인에 의한 거래의 기장 여부	29

사. 가치의 소재	29
아. 카드시스템과 PC시스템	30
자. PC시스템의 예	32
6. 조세정책과 세무행정 측면 : 일반적인 고려사항	33
가. 총괄	33
나. 중립성	33
다. 인터넷의 기술적 측면의 영향	34
7. 실정세법 관련 문제	37
가. 개요	37
나. 미국내 상거래 행위와 고정사업장	41
다. 디지털 정보 : 소득의 분류	47
라. 서비스소득의 원천	55
마. 글로벌 서비스 : 소득과 비용의 배분	56
8. 세무행정 및 납세순응 관련 문제	58
가. 총괄	58
나. 문제의 분류	59
다. 전자화폐	59
라. 신원확인	63
마. 기록유지 및 거래확인	65
바. 중개기관 배제 및 거래정보 신고	66
9. 결론	68

요 약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근로자, 소비자 및 사업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서비스 및 자본이 전세계 어느 지역으로든 즉시 이전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신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제품, 서비스 및 정보의 수입·수출을 증대시키고 전세계의 공급자 및 고객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신시장 및 신시장 메커니즘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보다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소비자들에게 제품 및 서비스 거래시장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부여될 것이다.

신기술 특히 인터넷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초고속정보망(information highway)상의 국가별 경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려 왔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한 거래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각국은 일관성이 결여된 과세영역(taxing jurisdiction)을 주장할 것이며,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가상과세(quixotic taxation), 즉 '명확하지 않은 세금'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신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확실성을 갖추었으면서도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 신기술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이 '중립성의 원칙(principle of neutrality)'에 입각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중립성」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세제를 신설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 소득에 대해 전산매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상거래 형태를 통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을 의미한다.

신기술에 의해 야기되는 본질적인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상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질 수 있는 국가 또는 국가들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존의 과세개념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상거래는, 전통적인 ‘원천근거과세(source-based taxation)’의 중요성은 적어지는 반면 거주지근거과세(residence-based taxation)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근래의 추세보다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도서, 음악 및 영상과 같은 디지털정보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로열티, 제품의 판매, 서비스 소득 등에 대한 구분이 전송의 편이성 및 디지털정보의 재생산성 측면에서 보다 세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무행정과 납세순응의 영역에서는 기존의 문제점들 외에 변형되거나 새로운 범주에 속하는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납세순응 문제는 전자화폐의 현금화와 같은 것들인데 이는 단적으로 신원파악이 안되고 거래흔적을 추적할 수가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신기술을 이용한 거래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신원파악 및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부호화 등의 과학기술 발전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전자서류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재무성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견해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독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재무성 국제세상담 부서 Joseph H. Guttentag에게 우송하거나, e-mail을 통해 ‘기술관련 쟁점’이라는 주제항목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견해들은 모두 여론수렴을 위해 공개될 것이다.

1. 서론

우리가 급속한 기술 및 사회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불과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았던 기술이나 사업들이 현재에는 널리 보급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인터넷을 포함한 ‘세계정보망(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혹은 ‘초고속정보망(information superhighway)’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역사상 유래 없는 막대한 정보의 전달이나 교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종래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클린턴 대통령은 “모든 가정이 초고속정보망에 접속하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으며 그것은 전화나 텔레비전과 같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일상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인간관계, 서신발송, 뉴스시청, 오락 등 여러 분야에서 방법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새로운 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영업방식의 등장을 수반하게 된다. 서비스 산업은 경제에 있어서 항상 성장하는 분야였다. 현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 서비스, 자본 등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즉각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혹자는 다양한 컨설턴트 그룹이나 프로젝트별 독립적인 계약자들로 구성된 가상기업(virtual corporation)이 등장함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전통적인 기업의 형태는 자연적으로 쇠퇴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이러한 기술진보는 국가간 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의 원칙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이러

한 기술발전이 국경이나 소득의 원천 및 성격을 불분명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현행 제도하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각국이 서로 일관성 없는 과세권을 주장하게 되어 납세자들에게 이중과세의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문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조세정책은 목표는 다른 부문에서와 같이 중립성, 공정성, 단순성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신규(新舊) 형태의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이나 국제조세정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¹⁾. 잠재적인 문제점을 연구하고 여론을 모은 뒤 기술 및 영업형태의 발전을 도모할 규칙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관련 당사자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재검토의 한 과정으로 의도된 것으로서 기술 관련 조세에 관한 입장을 밝히거나 장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다만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야기될 지도 모를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토론을 유도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관심 있는 납세자, 세무사, 학자 및 기타 여러 관련 당사자들로 하여금 제시된 문제나 기타 그들이 해결을 요

1) 본 보고서에서의 논의는 연방소득세 문제에 국한한다. 물론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발전이 본 보고서에서 논의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지방세(subfederal taxation)에 대한 영향과 같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성은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세제의 신설을 정당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재무성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부가가치세나 비트세(bit tax), 기타 소비세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구하는 유사한 조세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항들은 초기단계에서의 문제들이며 여러 방면에서 현대화 과정을 통하여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는 행정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내국세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재무성은 조세관련 「Ways and Means Committee」, 「Finance Committee」 및 「Joint Committee」 등을 통해 필요한 법령상의 변화를 연구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특정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재무성은 OECD와 같은 기구와 이들 현안들에 대한 국제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공동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재무성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은 구조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들은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기술발전 및 영업형태의 변화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일반적이고도 유연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술발전에 대해 현존하는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고 재해석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의 정립도 필요할 것이다.

초고속정보망의 본질에 대해서는 비단 조세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저작권, 프라이버시, 주식, 금융거래구조 및 경제계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정책국(Office of Tax Policy)과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재무성의 타부서 및 연방정부와 협의할 예정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논외로 한다.

2. 초고속정보망의 개요

가. 초고속정보망²⁾

초고속정보망 또는 세계정보망은 단순한 컴퓨터 네트워크나 통신 수단이 아니라 기존의 분리된 각각의 통신 및 전산시스템을 공동사용이 가능한 전세계 네트워크로 집중시킨 것을 의미한다³⁾. 초고속정보망은 점차적으로 정보, 필름,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의 폭넓은 영역을 음성통신과 케이블 TV를 통해 모든 사업장 및 가정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부분적으로는 통신비용의 급속한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서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용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에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취할 수 있게 된다.

나. 기술의 집중

초고속정보망의 형성에는 전화시스템, 케이블 및 위성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독특한 통신시스템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집중이 가능해진 것은 부분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기술변화에 기인한다. 먼저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s)에 있어서 전송매체가 데이터 전송능력이 제한된 동전선(copper wire)에서부터 무한한 전송능력을 가진 광섬유 케이블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

2) 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신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일 뿐이며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3) <http://nii.nist.gov>.

는 비디오나 X레이와 같은 다량의 정보를 신속히 전송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였다. 두번째 기술변화는 서류, 음성, 영상 비디오 등을 일반적인 계수(digital) 형태로 집합시키는 디지털화이다. 현금가치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정보도 디지털화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정보를 전자형태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인터넷의 발전은 통신혁명의 일부분

아래에서 논의될 인터넷은 통신혁명에 있어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분야이지만 통신기술 발전의 한 예에 불과하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광범위한 내부 네트워크, 즉 인트라넷(intra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와 같은 특정한 거래부문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 조세와 관련한 측면에서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통신하는지 온라인서비스와 같은 개인적이고도 독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지 또는 기업내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통신혁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컴퓨터 가격이나 원격통신서비스 및 서비스 부분의 성장 등 다양한 기술적·경제적 발전의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⁴⁾. 통신의 발달은 서비스를 전세계에 즉시 전송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결과로 서비스는 더 이상 소비되는 곳에서 생산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통신의 발달이 서비스 부분의 무역을 촉진하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서비스의 거래에 적용할 국제조세규칙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4) 미국의 경우 서비스 부분의 고용은 1980년에 총고용의 67%였으나 1994년에는 74%로 증가하였다.

라. 인터넷

인터넷은 초고속정보망의 가장 대중화된 부분이다. 원래 정부기관 및 학술기관을 연결하였던 인터넷은 전세계 네트워크로 확대되었으며 이용자는 3천만~6천만명으로 추정되고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 바 있다.

“아메리카대륙, 유럽, 태평양지역, 기타 국가 등의 조직체들을 잇는 범세계 네트워크이며…… 각 조직체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세계적 중앙기술통제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조직체들은 함께 일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전세계를 잇는 실질적인 네트워크와 같은 것을 창조해 왔다⁵⁾.”

인터넷은 중앙컴퓨터나 중앙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 중심에서 여러 방향으로 뻗어 나간 바퀴모양이라기보다는 A지점에서 B지점에 이르는 방법이 다수로 존재하는 거미줄과 매우 유사하다⁶⁾. 인터넷에 접속하고 각기 다른 부분들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TCP/IP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인데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단위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지정된 주소로 이전되도록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상이성 또는 통신기술의 상이성에 관계없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⁷⁾.

인터넷은 중앙컴퓨터 대신에 ‘루터(routers)’라고 불리는 수천만대의 컴퓨터를 이용한다. 루터는 마치 우편지국(postal substation)과 같은 것으로서 우편지국에서 서신의 전달경로를 결정하듯이 데이터 패킷(data packets)의 전달경로를 결정한다. 각각의 루터가 다른 모든 루터와 연결될 필요는 없으며 데이터 패킷은 상황에 따라

5) M. Meeker and C. Depuy, *The Internet Report*, p. 1~9, 1996.

6) “Survey : The Internet”, *The Economist*, July 1, 1995, p. 96.

7) Id.

가장 유용한 경로를 통하여 목적지에 직접 보내진다. 사실상 하나의 메시지로 구성되는 개인 데이터 패킷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재결합하기 위해 다른 루트 설정을 종료할 수 있다.

데이터 패킷은 기존의 전화통신망을 통해 송신된다. 그러나 인터넷은 어떠한 통신기술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교통은 케이블 TV 시스템이나 위성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3.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과 전자상거래

가. 배경

1) 월드와이드웹(WWW)

월드와이드웹(WWW 또는 web)은 인터넷에 있어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응용분야이다⁸⁾. 웹이 인터넷의 다른 구성요소와 구별되는 점은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여타 인터넷 서비스와는 달리 웹은 단순한 문서를 보여 주는 것만이 아니라 문서, 화상, 비디오 및 오디오 등을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웹문서는 클릭킹(clicking)으로 연결가능한 타문서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으며 전세계 어느 곳의 인터넷 서버(server)상의 다른 웹문서와의 연결도 가능하다. 웹에 접속할 때는 검색 프로그램(browser program)이 필요한데 검색기는 웹에 접속된 정보를 읽고 사용자에게 표준형태로 제시해 준다. 또한 인터넷 검색도구(search tools)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 웹페이지(web page)로 찾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 웹페이지와 웹사이트(web pages and web site)

개인이나 기업의 집적된 웹문서를 흔히 웹사이트(web site)라고 한다. 일정한 주소형식에 의해서 전세계의 사용자는 어떠한 웹사이

8) 1995년 말 현재 웹은 인터넷통신의 40%로 추산된다.

Kessler, "Serving the Internet," *Lan Magazine*, Sept. 1996, p. 43.

트상의 정보에도 접속이 가능하다⁹⁾. 또한 정보는 서버라고 불리는 중앙컴퓨터상의, 웹문서나 페이지의 형태로도 저장되는데 이때 서버는 전세계의 사용자들에 의해 접속이 가능하므로 어느 곳에 있던 문제되지 않는다.

3) 웹의 기하급수적 성장

웹이 급속히 성장해 왔다는 것은 그것이 불과 1989년에 발명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¹⁰⁾. 웹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광범위한 대중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화상 브라우저 프로그램(graphical browser program)은 1993년에 개발되었다¹¹⁾. 1996년 현재 25만개가 넘는 상업용 웹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주요 기업의 상당수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웹상의 홈페이지(homepage) 개설에 투자하여 왔다¹²⁾.

4) 기술장벽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은 전송속도(bandwidth)와 향상된 결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전송속도란 시스템간 데이터 이동의 속도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유용한 전송속도와 관련해서는, 뮤직 CD의 전체 분량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 약 이틀 가량 소요되지만 앞으로 2~3년 이내에 더욱 빠른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전송시간은 약 10~15분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다. 결제 또한 결정

9) 웹사이트와 웹브라우저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ypertext transfer protocol)을 사용하여 상호통신이 가능하다.

10) J. Marhoff, "A Free and Simple Computer Link," *N.Y. Times*, Dec. 8, 1993, D1.

11) Id.

12) K. DeBello, "Making Money on the Net," *Business Week*, Sept. 23, 1996, p. 104.

적인 요인인데 많은 사람들은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 제5장에서 설명함)가 전자상거래의 발달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데 동감한다. 만약 결제가 신용카드 번호를 전달하는 대신 ‘전자지갑(electronic wallet)’에서 마우스 클릭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전자상거래는 더욱 발달할 것이다¹³⁾.

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1) 개념

전자상거래란 전자기거나 기술을 통하여 2인 이상의 당사자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환 등의 거래가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¹⁴⁾. 현대 경제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상품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와 녹음·녹화된 오락물(영화 및 음악)이라는 사실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2) 도소매

현재 많은 우편판매회사나 도매업자들에게 있어서 웹페이지는 기존의 종이로 된 카탈로그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웹페이지는 상품의 이미지 및 생산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종이로 만들어진 카탈로그와 유사하다. 또한 소비자가 판매자 재고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물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도서판매자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주제 및 저자명으로 백만권이 넘는 도서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13) 이것은 곧 실현될 것이다. P. Lewis, "A Technology for the Cyber-Marketing Age," *N.Y. Times*, Sept. 18, 1996 D1 및 M. Jerome and W. Taylor, "Mint a Million," *PC/Computing*, Oct. 1993, p. 73.

14) XIWT Cross-Industry Working Team, *Electronic Commerce in the NII*, 1995. 및 <http://192.216.71/iw/center/hotweco.htm>.

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웹사이트는 하루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전세계 60여개국에 넘는 국가로부터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웹사이트는 단순히 도서의 선택과 주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도서가 출판되었을 때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통지해 줄 수도 있다.

3)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형태로 개발되어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역시 전자형태로 판매 또는 배달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가 플로피 디스켓이나 CD롬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판매자의 컴퓨터에서 구매자의 컴퓨터로 직접 전송되는 것이다. 즉 전자 소프트웨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하면 소비자는 암호 형태로 다운로드받은 후 수신자부담 전화를 통하여 개인 네트워크상으로 확인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다.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으면 소비자는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암호화된 열쇠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이미 존재하는 계좌를 통해 지불할 수도 있다.

4) 사진

사진 역시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사진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주제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전시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진을 필요로 하는 출판업자나 광고업자와 같은 소비자들이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설치해 놓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대가지불은 소비자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¹⁵⁾. 학

15) 제7장의 다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사진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의도는 동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조세 및 대금결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의 리포트 작성 등 극히 개인적인 용도에서부터 많은 양의 복사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상업적인 용도에 이르기까지 누진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는 5단계 정도의 가격구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5) 온라인 정보

전자연구 데이터베이스(electronic research database)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Lexis, Nexis, Dialog와 같은 서비스는 법률자료, 신문 및 잡지기사 등 광범위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고객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화면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인쇄할 수도 있다. 현재 책자와 이와 같은 온라인 연구서비스와의 차이점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 즉 업무에 참고가 될만한 다양한 출판물들이 CD롬과 같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으며 일단 디지털화되면 전자상태로 이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예로 현재 일부 백과사전과 같은 것은 CD롬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한 상태이다¹⁶⁾. 따라서 속도가 빠른 모뎀(modem)을 연결한다면 사용자가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에 CD롬을 접속하는 것이나 원거리에 위치한 주전산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 사이에 별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나 시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는 손쉽게 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update)가 가능한 후자가 전통적인 'hard copy'나 CD롬보다 더욱 유용하다. 앞으로 데스크톱 컴퓨터용 소프트웨어가 데스크톱과 웹 기능을 통합한 형태의 공유영역(interface)을 채택함으로써 데스크톱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와 네트워크로부터 입수된 정보와의 구별은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¹⁷⁾.

16) "Encyclopedias on CD-ROM. 32 into 1 will go," *The Economist*, Feb. 17, 1996, R11.

17) S. Rupley, "Half Open or Half Closed," *PC Magazine*, Dec. 3, 1996, p. 28 및 A. Cortese, "The Software Revolution," *Business Week*, Dec. 4, 1995, p. 78.

6) 서비스

서비스 부문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부문이다¹⁸⁾. 예를 들면 다수의 회계법인이 현재 전자형태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이용료를 납부하면 가입자들은 그 기업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패스워드(password)를 부여받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거나 필요한 뉴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입자들이 질문을 제시하면 회계법인의 조세, 회계, 경영 컨설팅 분야의 적절한 상담자와 연결될 수도 있다.

7) 보건

보건 분야 역시 전자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분야이다. 광통신연결은 질 높은 의학적 영상을 불과 몇 분 안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는 70명의 방사선학자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있는 통신진료센터로부터 X레이 필름을 받아 볼 수 있다¹⁹⁾.

8) 화상회의

화상회의(video conferencing) 역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주고 있다. 현재로서는 높은 비용 및 전문장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²⁰⁾.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폭넓은 보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시골의 거주자가 도시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때 사용될 수도 있으며²¹⁾ 코치가 운동선수들을 지도하거나²²⁾ 고용주가 구

18) "The Doctor Will See You Now—Just Not in Person," *Business Week*, Oct. 3, 1994, p. 117.

19) Id.

20) B. Gate, *The Road Ahead*, 1995, p. 149~150.

21) "The Doctor Will See You Now," *supra* note, p. 18.

22) 전화나 팩시밀리 또는 비디오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캔사스에 있는 사

직자를 인터뷰할 때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²³⁾. PC에 연결할 수 있는 저렴한 데스크톱 비디오 카메라가 도입되고 인터넷 접속속도가 빨라지면 화상회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²⁴⁾.

9) 도박

미국에서는 인터넷 gambling이 불법이지만²⁵⁾ 해외에는 이미 인터넷 카지노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카지노는 웹사이트상으로 슬롯머신, 블랙잭, 콘커, 룰렛 게임 등을 제공함으로써 실제의 카지노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다²⁶⁾. 고객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카지노와 연관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요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도박의 승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다. 아마 앞으로는 도박자들이 자신의 전자화폐를 사용해 배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 주식거래

주식중개 및 투자신탁 기업들은 고객이 주식, 채권, 투자신탁, 옵션 등을 전자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²⁷⁾. 고객들은 추가분석이나 기업분석 등과 관계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온라인으로 주식을 지정하고 분량, 가격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주문은 불과 1분 만에 완료·확정된다. 이러한 거

이클 선수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지도자로부터 개인교습을 받을 수도 있다. F. Matheny, 'Mail Order Coach,' *Bicycling*, Jan. 1996, p. 50.

23) E. Wee, "Computers Give Firms a Window to College Prospects," *The Washington Post*, Nov. 19, 1996, B1.

24) *The Road Ahead*, *supra* note 20, p. 149~150, 및 p. 178~179. 기타 화상회의에 관한 또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C. Levin and Rupley, "Collaboration on Call," *PC Magazine*, Sept. 10, 1996, p. 31을 참조하기 바란다.

25) 18 U.S.C. § 1084.

26) J. Sterngold, "A One-Armed Bandit Makes a House Call," *N.Y. Times*, Oct. 28, 1996, D1.

27) "Getting Wired," *Barrons*, May 6, 1996, p. 37.

래가 지금은 재래식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외시장(secondary market)에서의 거래와 증권 역시 온라인으로 호가(offer)되고 있다²⁸⁾.

11) 글로벌 딜링(global dealing)

「글로벌 딜링」이란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중개업자가 전세계 시장에서 끊임없이 고객의 주문을 실행하거나 금융상품의 전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와 같은 글로벌 딜링은 인터넷 대신에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떠한 통신수단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은 조세목적의 차원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딜링은 전세계 각지로부터 주문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또 기업의 거래형태가 시장이 열려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컴퓨터 통신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12) 역외금융 및 법인설립(offshore banking and incorporation)

일부 웹사이트는 현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기능과 아울러 역외 법인 설립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기업명, 영역 및 주식수 등을 명확히 하여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보내면 이것은 서비스회사로 이전되어 필요한 형태로 준비되고 보관된다. 물론 종전에도 개인이나 기업은 이러한 역외기업이나 역외금융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통신기술의 발전이 이를 보다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가능케 해 주는 것이다.

28) L. Eaton, "Wall Street Without Walls," *N.Y. Times*, Nov. 7, 1996 A1; L. Eaton "Initial Public Offerings, Coming Your Way over the Internet," *N. Y. Times*, Oct. 23, 1996, D10(본 보고서에서는 논의로 하고 있는 유가증권법적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4. 보안 및 암호

가. 오픈 시스템

인터넷은 그 자체가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애초에 공공보안 시스템을 계획하지 않았다²⁹⁾. 따라서 실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요청되는 것은,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상업 거래에 국한되는 보안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보안장치 중의 하나가 전자지불이나 중요문서와 같은 은밀한 개인적 자료가 탈취, 복제, 수정되는 것을 최일선에서 방지하는 전송의 암호화이다³⁰⁾. 인터넷에 요구되는 보안장치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공용암호(public key encryption)에 달려 있다. 또한 메시지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암호장치는 메시지 수령자로 하여금 발송자의 신원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의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용암호

많은 소수(prime numbers)들의 수학적 배열로 만들어지는 복잡

29) 바로 이러한 성격에 의해 인터넷은 보안성이 없는 채널이다. 즉 데이터 패킷은 명백한 주소를 가지고 있고 무작위적인 경로를 취하므로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해커라면 인터넷 주소를 훔내내어 자료를 탈취하거나 읽어 보거나 수정할 수 있다(E. Bott, "Online Security," *PC/Computing*, Sept. 1996, p. 344). 기업내 네트워크와 같은 경로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좀더 보안성이 있다.

30) 본 보고서는 암호와 관련하여 조세 이외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조하거나 추론할 의도가 없음을 밝힌다.

한 형식에 근거한 공용암호는 개인이 한번도 만난 적이 없거나 이미 통신한 적이 있는 타인에게 보안이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가능케 해 준다³¹⁾. 만약 공용암호가 의도한 대로 운영된다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무행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용비밀장치(public key cryptosystem)는 일련의 숫자 배열로 만들어진 두 가지 보완적인 열쇠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용열쇠와 비밀열쇠(또는 개인열쇠)가 그것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열쇠에 의해 생성된 코드를 열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개인의 공용열쇠를 알고 있다고 해서 비밀열쇠를 알아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용열쇠는 공표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폭넓게 보급될 수도 있다.

수령자에게 암호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은 수령자의 공용열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령자는 자신의 비밀열쇠를 사용하여 그 암호메시지를 해독한다. 수령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는데 이는 본인 이외에는 비밀열쇠로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메시지를 암호화한 사람일지라도 이를 해독할 수 없는 것이다.

자료의 증명(확인) 또한 가능하다. 발송자 자신의 비밀열쇠가 메시지의 암호화에 사용됨으로써 디지털 서명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발송자는 자신의 디지털 서명의 창출만을 위해 별도의 열쇠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령자는 발송자의 공용열쇠를 사용하여 메시지 암호해독을 함으로써 발송자가 메시지의 원래창작자(소유자)인지 또 메시지가 타인에 의해 수정되지 않았는지 등의 여부를 밝힐 수 있는데 그것은 발송자만이 그 서명을 만

31) *The Road Ahead*, supra note 20, p.107; J. Prosis, "Digital Signatures : How They Work," *PC Magazine*, Apr. 9, 1996, p. 237.

든 비밀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디지털 부호화한 메시지를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발송자가 차후에 자신의 서명을 부인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먼저 발송자의 비밀열쇠로 메시지에 서명하고 이 메시지를 다시 수령자의 공용열쇠로 암호화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보안과 확인(증명)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 한편 수령자는 이러한 과정을 역으로 수행하면 된다. 즉 자신의 비밀열쇠로 메시지를 해독하고 동봉한 발송자의 공용열쇠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수령자의 소프트웨어로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³²⁾.

32) Philip Zimmerman, *PGP™ Users Guide*, Volume I 에서 요약한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PGP™ 및 <http://www.pgp.com> 및 기타 웹사이트에서 검색가능하다.

5. 결제방법

가. 개요

현재 통화공급의 많은 부분이 은행의 계정대차나 금융기관의 회계장부의 형태로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전선망을 통해 이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폐나 동전과 같은 지급수단은 더 이상 거액의 달러 결제나 외환거래 등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금융거래 가액의 90% 정도에 해당하는 금융거래가 전자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소비자 거래에 있어서도 소매점 포에서의 자동금전출납카드(automatic teller machine card) 사용이 증가하는 등 전자형태의 결제가 일반화되고 있다.

본장에서 주로 논의되는 전자화폐란 금융거래의 양적 측면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전자결제시스템(electronic payment system)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전자결제시스템은 디지털 형태로 그 가치를 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전자화폐는 아직은 미개발 상태에 있는 광범위한 개념의 산물이다. 그러나 전자화폐시스템은 일반화폐제도와 분명히 유사한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현행 우리의 세무행정 및 납세순응제도에 융화시키는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자결제시스템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단계이다³³⁾.

33) 미국 재무성은 전자화폐제도에 대하여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측면 이외에도 은행규제, 소비자 보호, 법률집행 등 다양한 부분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Department of Treasury, *An Introduction to Electronic Money Issues*, Sept. 19, 1996을 참고하기 바란다.

나. 전자대차(electronic debit and electronic credit)

전자지불제도(electronic debit system)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의 자산에 근거하여 전자결제주문을 하거나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실례로는 판매점의 계산대에서 사용되는 자동금전출납카드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자지불제도의 출현으로 소비자는 하드웨어 장치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전자수표책(electronic checkbook)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본인 및 등록 확인이나 디지털 서명의 창출을 위한 것이다. 전자수표(electronic checks)는 인터넷의 e-mail을 통해 지불인(결제자)으로부터 수취인에게 보내지고 수취인은 확인을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배서(digital signature for endorsement)를 한 다음 계좌로 보낸다. 따라서 소비자나 소매업자 모두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전자수표의 취합, 이전 및 계좌입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만약 전자수표가 은행계정으로부터 발행되면 이는 기존 수표(paper check)와 유사하게 은행 시스템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전자신용시스템(electronic credit system)이란 기존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상인에게 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암호화한 형태로 전달하고 상인은 기존의 카드결제구조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다. 때로는 신용카드 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보낼 필요 없이 제삼자가 허가하거나 결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자대차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은행 또는 신용카드 거래 이행에 있어서 방법적인 측면에서만 변화를 보이는 것이므로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립적인 제삼자가 당사자의 거래사실 및 거래 규모가 나타나는 기록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에 대해

서는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 더구나 이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전자화폐와는 달리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요하지도 않는다.

다. 전자화폐

카지노칩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낸 경제적 가치의 표시인 것처럼 전자화폐는 디지털 형태로 표시된 화폐가치이다. 이에 비하여 위에서 언급한 전자대차시스템은 기능상 전통적인 수표나 신용카드 거래와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경제가치를 나타내는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형태의 전자화폐는 전자대차시스템이 전세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즉각적으로 기능하도록 해 줄 것이다. 결제제도나 결제제도의 구성요소로서의 모든 전자화폐시스템은 초고속 정보통신 분석을 적용함으로써만 가능하다³⁴⁾.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자화폐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어떠한 환경하에서 전자형태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것.
- 경제적 가치의 보관 이전, 수령을 가능케 하는 선진화된 정보 기술 일체
- 보안 및 공공통신 네트워크의 암호화와 관련한 현대적 과학발전에 관한 모든 것
-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절감 및 규모의 경제에 기인하여 야기된 모든 것
- 금융제도 내부에서 유지되고 있는 자금의 로딩(loading)이 요구되는 현재 상태로서의 모든 것

34)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Exploring the World of Cyberpayment: An Introductory Survey*, Sept. 27, 1995.

자금의 로딩이란 발행인이 이서한 디지털 가치로서 현금이나 예금이 교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령 은행에 동일한 액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자동금전출납기에서 스마트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폐를 PC의 하드드라이브로 다운로드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 전자화폐의 구분

전자화폐시스템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인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발행인의 신원
- ② 발행인에 의한 거래의 기록 여부
- ③ 제삼자의 원장이나 소비자의 보관장치에 가치가 기재되는지의 여부
- ④ 가치에 대한 접근 및 이전 수단

이와 같은 차이점들은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어떠한 특정한 전자화폐제도하에서 이러한 차이점들은 그 시스템을 세무행정 및 납세순응제도에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 또 현재의 세무행정 및 순응제도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므로 중요하다.

마. 발행인의 신원

전자화폐시스템들을 구별짓는 첫번째 요인은 발행인이나 스폰서의 신원에 관한 것이다. 현단계에서 전자화폐는 은행, 비은행금융서비스회사 또는 비금융권회사 등에 의해서 발행이 가능하다.

바. 발행인에 의한 거래의 기장 여부

두번째로 전자화폐는 발행인에 의한 거래의 기장 여부에 의해 기록시스템과 무기기록시스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록시스템에서는 전자화폐 발행인이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거래추적장치를 갖추고 있어 전자화폐가 누구에게 발행되는지와 경제활동을 통해 전자화폐를 수취하는 개인과 사업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무기기록 시스템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추적장치 없이 전자화폐가 발행되고 경제활동을 통해 유통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기기록시스템하의 전자화폐는 무기명으로 유통되므로 마치 지폐와 같이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전자화폐(accounted e-money)와 무기기록전자화폐(unaccounted e-money)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기기록시스템하에서는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들을 해결할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행인에게 위험 부담이 있다. 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현금을 사용함으로써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거래에 대해 기록전자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기록시스템하에서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상인과 전자화폐 발행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소규모 거래에서 전자화폐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소비자가 거래에 대한 독립적인 기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록시스템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사. 가치의 소재

전자화폐 구분의 세번째 중요한 요인은 전자화폐가 제삼자에 의해 유지되는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notational electronic

money) 아니면 소비자의 대용화폐(token)에 저장되어 있는지(token electronic money)에 관한 것이다. 「notational e-money system」하에서는 경제가치가 제삼자의 원장에 기재되어 있고 하나의 항목을 공제하여 다른 항목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교환된다. 즉 제삼자는 거래를 확인 또는 승인하는 별도의 관리장소인 것이다. 「token e-money system」하에서는 스마트카드나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기타 저장장치에 경제적 가치가 저장되고 기존 화폐처럼 지불인과 피지불인 사이에 직접적인 교환이 가능하다.

아. 카드시스템과 PC시스템

전자화폐 구분의 마지막 요인은 PC시스템(PC-based system)인지 카드시스템(card-based system)인지에 관한 것이다. PC시스템 하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개인 컴퓨터내에 유지되며 전자형태로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이전된다. 즉 PC는 경제적 가치의 창고역할과 그 가치의 접속장치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³⁵⁾.

PC에 기초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컴퓨터 스크린상에 나타난 가상 지폐나 동전에 클릭하거나 액수를 입력함으로써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인터넷을 검색하는 동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웹브라우저 소프트웨어와 충분히 통합된다.
- 사용자의 현재 잔액을 보여 준다.
- 거래완료를 확인하고 현재잔고를 유지한다.

35) *Cyberpayment*, *supra* note 34, p. 8~9.

36) “메모리(용량)는 전형적인 신용카드나 요금카드에 있는 마그네틱 바의 약 80배에 이르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처리장치는 자로

한편 카드시스템은, 전자현금을 포함하는 모든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플라스틱 카드인 이른바 스마트카드를 사용한다³⁶⁾. 고객들은 금전등록기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가정에 특별히 개설된 전화를 통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개설은행으로부터 카드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받는다³⁷⁾. 이와 같이 저장된 경제적 가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판매기나 금전등록기에 부착할 수 있는 별도의 접속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지하철 등에 이용되는 요금카드와 유사하게 경제적 가치가 저장된 카드를 접속장치에 넣으면 결제금액만큼 카드로부터 상인의 계좌에 이전되는 것이다. PC시스템이 원격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이라는 점에 비해 이와 같은 카드시스템은 소매거래에 있어서 직접거래(face-to-face commerce)를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PC나 전화를 스마트카드의 접속장치로 이용하여 카드를 원격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 양자의 구별이 엄격한 것은 아니다.

한편 스마트카드 시스템은 그 형태가 ‘개방형(open system)’인지 ‘폐쇄형(closed system)’인지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폐쇄형은 한 사람의 카드발행인과 한 사람의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발행인과 판매자가 동일인이다. 이와 같은 폐쇄형의 일반적인 예로는 대중교통요금카드, 전화카드, 카피카드 등이 있다. 이에 비하여 개방형은 다수의 판매자들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는 한 사람 또는 다수의 발행인으로 구성된다.

의 보안을 위해 암호표기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J. Gleick, “Dead as a Dollar,” *N.Y. Times*, June 16, 1996, Section 6, p. 29. 또한 앞으로 이러한 카드의 메모리가 확장됨에 따라 의료나 개인정보와 같은 기타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경우 발생하게 될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있다.

37) 스마트카드를 넣도록 정교하게 제작된 전화는 곧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mart Phones : The Highest I.Q.’s Yet,” *N.Y. Times*, Sept. 5, 1995, C2 및 “Telephone Bill,” *The Economist*, Nov. 16, 1996, p. 76을 참조하기 바란다.

카드시스템은 비단 상업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경우 개인간에도 경제적 가치의 이전을 가능케 한다.

자. PC 시스템의 예

예를 들어 하나의 PC 시스템은 기존의 은행에 계좌를 이체함으로써 고객들이 은행으로부터 전자화폐를 구입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구매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양한 웹사이트를 검색할 때 그의 전자화폐 소프트웨어는 그 이면에서 작동하다가 프로그램이 결제가 필요한 때를 인지하고 구매자에게 거래승인을 통지하는 대화박스를 표시하게 된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구매자의 하드디스크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이동시켜 전자화폐를 나타내는 일련번호로 바꾸어 판매자의 컴퓨터로 이전하게 된다. 판매자의 컴퓨터는 발행은행과 접촉하게 되고 해당은행은 전자화폐를 표시하는 일련번호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통지해 준다. 그러면 판매자는 전자형태의 재화를 구매자에게 보내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전자화폐를 은행에 예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비은행, 대체통화, 무기록, PC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었다. 비록 전자화폐가 은행에 의해서 발행되더라도 은행이 거래과정에 개입되지 않으므로 비은행 시스템인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디지털화된 화폐를 나타내는 일련번호가 중앙기장(central ledger)이 아닌 소비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대체통화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자산으로 대체되기 이전까지는 발행자가 전자화폐의 사용에 관한 아무런 기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무기록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6. 조세정책과 세무행정 측면 : 일반적인 고려사항

가. 총괄

이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조세제도, 세무행정, 납세순응 등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기본조세정책의 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에 추가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술적·과학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나. 중립성

중립성이 기본원칙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중립성이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기존의 유통 판매 수단을 이용하는 간에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함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조세체계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시장의 기능만이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상거래 방법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원칙을 원용하는 접근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최근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기존의 원칙들을 적절히 조정하여 적용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다. 인터넷의 기술적 측면의 영향

기술적인 측면의 이해 없이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과세원칙이나 정책이 개발되기 어렵다. 제3장에서 현재의 전자상거래의 형태에 대해 설명한 바 있지만 인터넷의 기본적인 기술적 측면은 조세정책이나 세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완전분권

인터넷은 물리적인 위치를 가지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생성되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사용자 중에는 행정관료나 중개인도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전혀 통제할 수가 없다. 단지 그들은 다른 사용자와 상호성에 입각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정보나 전자화폐의 흐름을 막거나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에는 국경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나 전자화폐의 이전이 하나의 관할구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러 구역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중개기관의 불필요

일반적으로 주요 과세포착지점(taxing points)을 파악함으로써 납세순응을 보다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세관련자료의 보고의무를 활동내역을 파악하기 용이한 금융기관에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최대의 상업적 장점의 하나는 중개기관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3) 컴퓨터의 도메인 네임(domain name)과 실제위치의 무관련성

인터넷상의 주소인 도메인 네임은 단지 그 네임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줄 뿐이지 해당 인터넷 주소의 컴퓨터에 대해서 그리고 컴퓨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비록 전자우편의 주소가 어떤 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그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과세를 위한 자료인 납세자의 거주지나 신분확인이 어렵게 된다.

4) 중앙통제의 결여/등록

새로운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등록조건은 까다롭지 않으며 새로운 통제자에게 사이트를 이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편이다.

5) 감사의 용이성/원격조정

해당 사이트의 통제자가 목인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하고서도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캐나다에 소재한 컴퓨터를 통해 미국인들을 고객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하자. 이때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캐나다의 컴퓨터를 원격조정할 수 있다. 더욱이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수도 있다.

6) 내용의 확인

모든 전자통신은 일련의 이진수(binary digit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환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개인의 사적인 편지와 전자화폐의 전달 메시지를 구별할 수 없다. 내용의 성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암호 사용으로 인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7. 실정세법 관련 문제

가. 개요

1) 총괄

본절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현실적인 조세원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³⁸⁾. 미국내 상거래 개념, 고정사업장, 소득원천 등과 같은 현재의 조세개념은 지금과 다른 기술적인 여건하에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래와 전자상거래 사이의 중립성의 원칙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세계를 고려하여 현존하는 조세원칙을 전자상거래에 적용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중립성이나 기존 조세원칙에 근거한 접근은 이를 국제표준에 적용시키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기존 조세원칙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의 세법에 통용되는 것이다.

2) 과표

미국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원천과 그 소득을 창출한 자의 거주지

38) 본장에서는 미국의 국제조세규칙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법 및 규칙의 조항들은 기술발전이나 현대경제에 있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형재의 역할 등에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 그 예로서 미국인들 중에는 무형재 관련 조인트 벤처에 종사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국제 조인트 벤처에 무형재를 빈번하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전된 재화가 무형재라고 한다면 로열티를 대가로 무형자산을 라이선싱해 준 미국의 이전자에게 제 367조 (d)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제863조 (d)항 및 (e)항 역시 가상공간활동 및 국제활동과 국제통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규칙으로 제시될 수 있다. 위의 각 조항하에서의 규칙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재무성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와 범조항 및 관련 해석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에 근거하여 과세한다. 미국의 원천소득은³⁹⁾ 미국 시민, 거주자 및 기업의 전세계적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의해 발생될 경우에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⁴⁰⁾. 미국인의 경우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그들의 소득이 순과세 기준의 대상이 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의해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⁴¹⁾.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원천과세의 최소화를 통하여 납세자를 이중과세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3) 소득원천

소득원천국이 소득세징수권을 갖고 거주국은 공제제도 및 감면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득원천의 개념은 국제조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원천의 원칙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하다. 보통 소득의 원천은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위치하게 된다. 가령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그 지적재산이 이용되는 곳에 원천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⁴²⁾. 노동 및 개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득은 그 노동이나 개인서비스가 이행된 곳에 원천이 존재한다⁴³⁾. 더 나아가 거주지에 근거한 원천규칙은 거주국이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의 발생지라는 측면에서 캐피털 개인이나 스왑소득(swap income)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어 왔다⁴⁴⁾. 일반적으로 소득항목의 본질은 소득원천이 그 본질에서 비롯되므로 소득원천의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⁴⁵⁾.

39) Section 871, 881 및 882.

40) Section 1 및 11.

41) Section 901 및 그 이하 내용.

42) Section 861(a)(4).

43) Section 861(a)(3) 참조.

44) Section 865 및 Rev. Rul. 87-5, 1987-2 C.B. 180 참조.

45) Section 861~865.

4) 조세조약의 역할

미국은 최근 48개 국가와 포괄적인 소득세 조약을 체결했다. 이들 조세조약에서 나타난 원칙은 원천국의 과세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한편 거주국에 무제한적인 소득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조세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다. 즉 소득원천국은 영업이익 등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장소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득원천에 근거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약대상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배당, 로열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원천 세율을 제한하고 있다.

5) 거주지근거과세의 우월성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소득원천원칙과 거주지원칙이라는 두 원칙 모두에 근거한 과세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원칙 중 하나는 포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은 조세조약을 통하여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거주지근거과세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득원천에 근거한 과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정사업장 개념은 활동적인 영업소득에 대한 원천근거과세의 적절한 입구(threshold)를 설정함으로써 거주지근거과세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입구를 설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활동적인 영업소득의 원천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게 되고 해당소득은 단지 거주국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이자, 배당, 로열티와 같은 소득의 경우에는 여전히 잠정적으로 원천근거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원천징수의 영세율 때문에 거주지근거과세가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거주국은 제한적 원천근거과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이중과세를 개선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새로운 통신기술 및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거주지근거과세원칙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세계에서 특정한 지역적 위치와 소득을 연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소득원천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소득원천근거과세는 전자상거래에 의해 그 합리성을 상실하고 쇠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납세자들은 대부분 일정한 지역에 거주한다. 즉 개인은 거의 항상 한 국가의 시민 또는 거주자이며 적어도 미국 법제도하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주거지 근거법하에서 설립된다. 하지만 현재의 거주개념과 세법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소득원천의 개념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가 이미 어려워진 상황에서 납세자의 거주지개념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지역 그리고 이러한 소득에 과세할 기본적 권리를 갖는 지역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986년 조세개혁이 있을 때 의회는 비재고자산의 판매시에 거주지근거과세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이는 곧 “개인자산의 매매에 대한 소득원천의 원칙은 그러한 경제활동이 이행되는 지역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소득을 산출하는 경제활동 지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회의 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⁴⁶⁾. 더욱이 일부 특정한 개인 자산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매자의 거주지가 근본적인 경제활동이 발생한 지역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⁴⁷⁾ 이와 유사한 원칙이 특정한 공간이나 해외활동에 적용된 것이다⁴⁸⁾. 따라서 미국의 조세정책에는 전통적인 소득원천의 개념이 이미 그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거주지근거과세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거주지근거과세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다.

46) Staff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General Explanation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100th Cong. 1st Sess, May 7, 1987, p. 917.

47) Id.

48) Section 863(e) 및 1986 Bluebook, *supra* note 46, p. 932.

나. 미국내 상거래 행위와 고정사업장

1) 비거주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비거주외국인과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원천소득, 즉 미국내에서 개인서비스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나 미국내 상거래 행위에 기인하는 특정한 외국원천소득만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이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미국내에서의 거래나 영업활동에 관계된 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누진세율로 과세되었고⁴⁹⁾, 미국내 원천을 가진 연간 또는 기간별 고정소득, 이윤 등에 대해서는 그 총액에 대하여 단일비례세율(flat rate)로 과세되어 왔다⁵⁰⁾. 미국내 상거래 행위는 미국내에서의 개인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⁵¹⁾. 따라서 미국내에서의 상거래 행위는 외국인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의 최소한의 요건(threshold requirement)인 것이다.

2) 미국내(in the United States)의 개념

외국인이 상거래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내’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⁵²⁾. 그러나 외국인이 실제로 미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광고를 통해 미국내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그 주문에 따라 유형재를 미국내로 보내는 경우에는 비록 그가 분명히 상거래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의 상거래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⁵³⁾. 그러나

49) Section 871(b) 및 864(c).

50) Section 871(a), 881(a) 및 894.

51) Section 864(b).

52) 외국인이 미국내의 상거래 행위에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의 어려움은 미국내 상거래 개념에 대한 규정을 조세협약 및 교역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고정사업장 개념으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재무성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를 환영하고 있다.

53) "Piedras Negras Broadcasting Co. v. United States," 43 B.T.A. 297 (1941). aff'd, 127F. 2d 260(5th Cir. 1942).

이와 같이 미국내의 상거래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대리점 활동의 결과로서 미국내의 상거래 행위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될 수도 있다.

3) 조세조약의 영향 - 고정사업장 개념

조세조약은 활동소득과세의 원천기반에 대하여 상이하면서도 대체로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소득세 조약하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비거주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미국원천 활동소득(영업이익)은 그 소득이 미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비롯된 경우일 때는 단지 미국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활동을 전반적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고정영업장소이다⁵⁴⁾. 국제회계 분야에서는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까지는 타국의 조세권 범위가 미치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⁵⁵⁾. 따라서 미국과의 조세조약하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외국인은 그 소득이 미국내에서의 고정사업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미국내에서의 상거래 활동에 따른 미국의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미국의 과세범위

“미국내 상거래”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물리적 장소에서 이루어져 온 전통적인 상거래 형태에서 발전한 것이다. 반면 전자상거래는 국경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특정한 장소간의 관계를 없앨 수도 있다. 즉 전자상거래는 물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는 모호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54)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September 20, 1996, Article 5, paragraph 1.

55)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1995), Article 7에 대한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에 관여하는 사람은 전세계 어느 곳에든 거주할 수 있으며 그 고객 역시 판매자의 소재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잠재적으로 전세계의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발전이다.

전자상거래는 외국인이 미국내에 거주하지 않고도 미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가능케 해 준다. 따라서 외국인이 상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의 상거래 행위에 종사하는지 또는 미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내 상거래 행위나 고정사업장 등에 대한 개념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가 단순히 과세결과가 이해될 수 있는 영업활동 수단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의 활동이 미국내에서의 다른 활동 없이 단순히 미국내 고객으로부터 거래 주문을 받는 정도라면 이러한 활동을 미국내의 상거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미국내의 상거래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려해 보는 일도 필요하다.

또 다른 예는 미국내의 컴퓨터 서버를 유지 또는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것이다. 컴퓨터 서버는 세계 어느 곳에든 위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소재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서버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들은 미국내의 상거래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특정한 형태의 소득창출에 있어서 충분히 영향력 있는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에 합당하는 미국내의 서버가 존재한다면 외국인들이 미국 외부에 소재하는 서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미국내의 상거래 행위

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타 행위들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외부에 소재하는 컴퓨터를 통해 전산연구서비스를 수행하는 외국인은 기타 미국내의 활동이 없는 한 궁극적으로는 미국내의 상거래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산연구의 외국거주 제공자에게 마케팅이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종사하는 미국거주 개인은 그 컴퓨터 서버 및 기타활동이 미국 외부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을 위한 미국내의 상거래 활동에 해당될 수 있다.

5) 고정사업장

외국인이 미국내 상거래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그 외국인의 활동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므로 고정사업장의 유무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미국과의 조세조약하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일부 개인은 그들이 미국내의 상거래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의 부재에 따라 미국의 납세의무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내 고정사업장이란 비록 그것이 대리점 활동으로부터의 전가(imputation)됨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내에 고정된 영업장소를 의미한다⁵⁶⁾.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래 6)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전가에 의해 고정사업장이 창출되지 않는 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내의 고정사업장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사용되는 통신 및 컴퓨터 설비는 피고용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내 외국인의 고정영업장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킨다⁵⁷⁾.

미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컴퓨터 서버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미국내 고정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56) U.S. Model Tax Convention, *supra* note 54, Article 5, paragraph 5.

57) OECD Model Tax Convention, *supra* note 55, paragraph 10에 있는 Article 5에 대한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 행위에 대한 취급을 재검토하거나 이러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존의 예외가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 보는 일도 역시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에는 재화나 상품의 보관, 디스플레이,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은 포함되지 않는다⁵⁸⁾. 재화 대신 정보를 판매하는 사업에 있어서 컴퓨터 서버는 일종의 창고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⁵⁹⁾.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 개념에 대한 검토와 해석은 정책범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예외인정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6) 전가에 의한 미국내 상거래 행위와 고정사업장-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미국내 상거래 행위나 고정사업장은 대리인(agent)의 활동으로부터 전가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다⁶⁰⁾. 대리인에 관한 문제는 외국인과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 또는 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만약 어떠한 개인이 미국내의 컴퓨터 서버나 유상장비를 사용치 않는 전자상거래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미국내 상거래 행위 및 고정사업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보는 전화선을 통하여 고객의 컴퓨터로 이전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 서비스를 수행하는 외국인은 미국의 고객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통신회사와 회선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미국내 고객들은 미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외국인 정보 판

58) U.S. Model Tax Convention, *supra* note 54, Article 5, paragraph 4(a); OECD Model Convention, *supra* note 55, Article 5, paragraph 4(a).

59) 일부 대규모 서버들은 일반적으로 'data warehouses'라고 지칭된다.

L. Gomes, "Let's Share," *Wall Street Journal*, Nov. 18, 1996, p. 23.

60) U.S. Model Tax Convention, *supra* note 54, Article 5, paragraph 5.

매자의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과 지역통신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외국인의 대리인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만약 대리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의 활동으로 미국내에서의 상거래 행위나 고정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는다⁶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적용 가능한 원칙을 좀더 명확히 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필요할 것이다.

7)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세

어떠한 개인이 미국내 상거래 행위에 종사하거나 미국내 고정사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은, 그 개인이 우발적인 통신서비스를 수반하는 물품 및 서비스 판매사업에 종사하는지 또는 통신서비스 제공에 주로 종사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⁶²⁾.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에 공헌하는” 활동과 “이윤의 실현”을 포함하는 활동 사이에는 차이점이 인정되고 있다⁶³⁾. 미국내의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미국내의 컴퓨터 서버를 운용하거나 미국 및 해외 고객들에 대한 컴퓨터서비스 및 인터넷 접속 등을 제공하는 외국의 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명백히 자신의 이익 실현에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1) Id, Article 5, paragraph 6 및 OECD Model Convention, *supra* note 55, Articles 5, paragraph 5.

62) OECD Model Convention, *supra* note 55, Articles 5에 대한 해설(paragraph 23)을 참조하기 바란다.

63) Id.

다. 디지털 정보 : 소득의 분류

1) 디지털 정보의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도서, 음악, 이미지 등 디지털화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는 전자형태로 이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 소재한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을 지불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디지털화된 이미지나 비디오를 다운로드받을 수도 있다. 이전된 정보에 대한 구매자의 권리는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다양하다. 디지털화된 이미지의 구매자는 복사본 사용권리, 기업보고서 사용에 필요한 10여부의 복사본 제작권리, 제한된 인쇄 부수가 예상되는 학술적 용도로 재사용할 권리 또는 대중잡지에서 재사용할 권리 등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거래 중 일부는(판매자에게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사진의 실제 복사물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으며 또 일부는 미국의 저작권이나 유사한 자산에 대한 이용특권 부여에 따른 지급이 수반되므로 미국내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⁶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충분히 재생산하고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소득분류 원칙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디지털 정보를 포함하는 거래의 분류에 있어서도 유형자산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형태에 따른 분류를 무시하는 더욱 복잡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디지털 정보거래에 대한 과세와 저서의 복사본(hard copy)이나 영화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정보거래에 대한 과세 사이에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보가 배분되는 형태에 대한 결정은 조세에 의해 영향받지 않아야

64) Section 3, 2, 5, *supra*.

65) Section 861(a)(4), Section 871(a)(1) 및 Section 881(a)(1)을 참조 바란다. 또한 U.S. Model Tax Convention, *supra* note 54, Article 12와 비교하기 바란다.

한다.

2) 소득분류문제

디지털화가 가능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정보사용 및 저작권 사용특권에 따른 지급은 로열티로 간주된다⁶⁶⁾. 이와 유사하게 「U.S. Model Tax Convention」은 로열티에 대하여 “출판물, 영화필름…… 등을 포함하는 예술, 과학적 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보답으로 수령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⁶⁷⁾. 그러나 디지털 정보거래에 대해 이러한 정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자구매와 같은 이러한 거래의 일부가 단순히 물질적인 대상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거래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디지털 정보는 때때로 구매자에 의해 완전하게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누군가가 10부의 서적구입을 희망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는 출판업자로부터 10부의 서적을 구입하겠지만, 만약 그가 10부의 전자도서 구입을 희망한다면 단순히 1부의 전자도서 복사본을 구입하고 추가적으로 9부의 복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된다. 이와 같은 거래는 당연히 로열티 소득의 창출로 연계될 수 있다.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있으며 제삼자에게 재생산을 허가함으로써 지급받는 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보수)인 것이다. 반면 이러한 거래를 단순히 디지털화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과정으로서 출판업자로부터 10부의 복사본을 구입하던 것이 복사본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의 독특한 성격을 고려하는 차원에

66) Section 861(a)(4) ; Treas. Reg. § 1. 861-5.

67) U.S. Model Tax Convention, *supra* note 54, Article 12, paragraph 2.

서 ‘로열티’의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에 대한 규정안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거래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분류와 관련하여 제시된 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이며⁶⁸⁾ 최종 법제화되기 이전에 다양한 의견제시를 기대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규정들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거래에 제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디지털 정보에도 적용가능한 기본골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성은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규정안은 해당 자산이 유형재인지 무형재인지에 따른 분류가 디지털 정보의 독특한 성격을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판단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 디스켓이 이전되었다면 표면적으로는 유형재화의 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프로그램이 전화선을 통하여 전자기(electronic impulse) 형태로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무형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분류는 거래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다. 규정안에 대한 검토는 부분적으로는 전달수단을 배제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피하고 있다.

규정안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거래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것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⁶⁹⁾.

- ① 저작권의 이전
- ②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의 복사물 이전
- ③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선 및 수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
- ④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과 관련한 노하우(know-how)의 제공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양수인(transferees)이 취득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창출되는

68) Prop. Treas. Reg. § 1. 861-18, Fed. Reg. 58, 152(Nov. 13, 1996).

69) Prop. Treas. Reg. § 1. 861-18(b)(1).

본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규정안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들 규정안은 기존의 조세원칙의 구도하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를 분석 가능하도록 하는 이들 권리들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규정안에서 시도된 기본적인 구별은 저작권 자체의 이전과 저작권이 보호되는 물질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규정안은 이전된 권리가 저작권에 속하는 권리인지 또는 저작권 보호대상작업에 대한 권리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원칙을 원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별한 성격에 비추어 타당할 때에는 저작권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가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세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분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거래가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일 경우에는 이전된 저작권에 있어서의 ‘모든 실제적인 권리(all substantial rights)’ 여부에 따라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의 매매 혹은 교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만약 당해 거래가 저작권 보호품목의 이전이라면 ‘수익 부담(benefits and burdens)’ 분석적용에 근거하여 저작권 보호품목의 매매, 교환, 리스 중의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구도는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아직 미개발 상태에 있는 기타 다른 형태의 디지털 정보의 거래를 취급하기에 충분하도록 유동적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과 구별은 물론 기존의 법체제내에서 설정가능한 것이다. 규정안의 참신한 측면은 디지털 정보의 독특한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규정으로 인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준하여 판매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판매보다는 라이선스를 통하여 개인 사용자에게 이전하는데 이는 저작권법하에서 프로그램 복사물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권리를 양수인이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규정안은 라이선스에 의해 취

득된 권리가 저작권 권리인지, 양수인이 프로그램 복사물을 소유함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⁷⁰⁾.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규정안은 엄밀한 저작권법의 분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정보의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를 통해 빈번하게 분배된다. 사이트 라이선스하에서도 피면허인 licensee)은 프로그램을 저장한 단지 한 장의 디스켓과 내부사용을 위한 특정량의 복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하에서 거래 및 저작권 권리사용에 적용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안은 이 거래에 대하여 과세목적상으로는 상품매매와 같이 취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⁷¹⁾. 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재생산할 권리가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가된 권리이고 이것이 순수한 저작권법의 분석하에서 라이선스 형태로 거래를 형성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규정안은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소박한 권리가 이러한 분석의 목적에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거의 비용부담 없이 완전하게 복사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산할 수 있는 소박한 권리는 조세목적에 있어서 무시되고 있다. 규정안은 재생산할 권리는 대중에게 그 복사물을 판매할 권리와 결합될 때만 타당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조세원칙이 전자상거래의 독특한 성격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예이다.

4) 서비스소득의 정의

디지털 정보는 물품판매로 인한 소득 및 로열티와 구분되어 서비

70) 조세분야에 있어서 법률전문가나 실체성, 현실성 및 형식적 문서에 관계하고 있는 법원은 경직되어 있지 않다. *Helvering v. Lazarus & Co.*, 308 U.S. 252, 255(1939).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Rice, Licensing the Use of Computer Program Copies and the Copyright Act First Sale Doctrine*, 30 *Jurimetrics* 157(1990)을 참조하기 바란다.

71) Prop. Treas. Reg. § 1. 861-18(h), Example 10.

스소득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난점들을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다⁷²⁾. 이러한 구별은 소득원천의 결정이나 「Subpart F」 규정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법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Subpart F」 하에서 외국기업의 판매소득 개념은 동 기업의 서비스소득과 상이하다⁷³⁾. 따라서 거래 자체가 서비스소득과는 구별되는 판매소득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는 그러한 소득이 현재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Subpart F」 소득이 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비스소득과 다른 형태의 소득에 대한 구별은 세법 전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서비스 계약과 기타 계약의 구분이 불명확하다⁷⁴⁾. 비록 많은 상거래가 유형자산의 제공이나 서비스 수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의 주축이 되는 특징에 따라 분류된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서비스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서신이나 서류의 제공을 수반한다. 즉 서비스의 이행에 있어서 유형자산의 제공이라는 거래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⁷⁵⁾. 이와는 대조적으로 만약 소매점이 고객에게 양복 한 벌을 판매하고 구매가격의 한 부분으로서 약간의 수선을 약속하였다고 하면 이러한 서비스의 이행은 물품판매계약의 부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⁷⁶⁾.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분류와 관련한 규정안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물품판매와 서비스제공간의 구별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만약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을 때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규정안은 개발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⁷⁷⁾. 이와는 대조적으

72) Karrer v. U.S., 152 F. Supp. 66(Ct. Cl, 1957).

73) Section 954(d)와 954(e)를 비교해 보기 바란다.

74) 예로서 Section 7701(e)를 참조하기 바란다.

75) 예로서 Rev. Proc. 71-21, 1971-2 C. B. 549를 참조하기 바란다.

76) 이에 대한 예로서 Treas. Reg. § 1. 451-5 참조하기 바란다.

77) Prop. Teas. Reg. § 1. 861-18(h), Example 12.

로 만약 프로그램 개발을 위임하는 자가 그 개발과 관련한 모든 손실위험을 감수하고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저작권 권리를 소유한다고 하면 규정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⁷⁸⁾. 비록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가 초미니 서비스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자체의 이전 또는 저작권이 보호되는 대상품목의 이전으로 분류되어야 함을 규정안에서는 명확히 하고 있다⁷⁹⁾.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정보의 거래와 같이 신기술과 관련되어 이러한 구별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백과사전과 같은 참고서적은 인쇄 및 제본비용이 단지 백과사전 가치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질로 판매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소득은 재화의 판매에 의한 소득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한 질의 백과사전의 구매와 CD롬 세트나 백과사전의 내용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졌다. 만약 고객이 충분히 속도가 빠른 모뎀을 연결하고 있다면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과 자신의 PC에 의해 CD롬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게 될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창출되는 소득의 분류는 불명확한 데 비해 CD롬의 판매는 물품 판매 소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⁸⁰⁾. 온라인 서비스는 저작권 보호물의 복사본을 배분하는 수단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소득의 창출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CD롬 구매자는 1회의 대가지급으로 영속적인 사용권리를 취득하는데 비해 온라인 서비스는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기적인 대가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품판매와 서비스소득간의 구별은 이 분야에서는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⁸¹⁾.

78) Prop. Teas. Reg. § 1. 861-18(h), Example 15.

79) Prop. Treas. Reg. § 1. 861-18(b)(2).

80) PLR 9633005(Aug. 19, 1996).

따라서 세법규정의 이면에서 정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외국법인규제법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정보 및 서비스를 전자형태로 판매하는 납세자의 능력은 「Subpart F」의 외국법인규제(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규정과 관련되는 기존의 법규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⁸²⁾. 「Subpart F」는 외국법인규제상의 미국주주에게 유동성이 강한 특정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외국법인규제법을 통한 조세유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이 웹사이트나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설치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서비스의 거래에 광범위하게 종사할 수 있다면 「Subpart F」의 집행에 막대한 어려움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개인은 이미 그들의 사업을 해외에 주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³⁾. 다음의 제8장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은 외국기업의 판매소득을 발생시키는 납세자의 신분 및 소득규모의 확인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행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고려하여 「Subpart F」 및 하부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81) 이 형태는 다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다. 즉 CD롬 구입자가 기간별 대금지급을 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받는 반면 온라인 서비스는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총괄요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메커니즘의 차이점이 적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82) Section 951-964.

83) M. Murphy, "Cooling the Net Hype", *Wired*, Sept. 1996, p.86.

라. 서비스소득의 원천

1) 지리적 근거

노동 또는 개인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소득은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가 물리적으로 미국에 존재할 경우 단지 미국원천소득이 된다⁸⁴⁾. 이러한 원칙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이다⁸⁵⁾. 이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소가 위치한 국가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에 근거한다. 이러한 개념은 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서비스소득은 외국법인규제상의 설립관련 법규하에서 단지 국가 외부에서 이행된 서비스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Subpart F」의 목적에도 역시 부합된다⁸⁶⁾. 여행 및 통신이 보다 능률적이고 저렴해지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와 서비스 소비자의 위치간의 관계가 약화되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의사가 대면접촉의 필요 없이 통신망이나 화상면담(video conferencing)을 통해 어떠한 질병을 원격 진단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기존개념의 역할

이와 같은 기술발전은 일반적으로 기존 통신설비의 확장을 뜻한다. 예를 들면 화상면담은 전화면담을 대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서비스 제공자들이 저과세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지므로 이러한 통신기술의 발전이 잠재적으로 일부 과세기반을 침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거주지근거 과세라는 현재의 일반원칙의 개정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형태의 소득에 대한 규정의 제정에 있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물리적인 위치와 컴퓨터 서버나 통신망의 위치와 같은 기타 잠

84) Section 861(a)(3); Section 862(a)(3).

85) OECD Model Tax Convention, *supra* note 55, Article 15에 대한 commentary(paragraph 1).

86) Section 954(e).

재적인 원천증거(indicia of source)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의 원천이 갖는 의미가 희석되거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면 거주지근거과 세가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 글로벌 서비스 : 소득과 비용의 배분

1) 범세계적 제휴

전절에서는 서비스 이행에 따른 소득의 원천 결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대적인 통신으로부터 야기되는 범세계적 제휴의 증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 한 예가 글로벌 딜링이다. 이미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글로벌 딜링이란 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전세계 및 전시간에 걸쳐 고객의 주문을 이행하고 금융상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딜링은 현대적인 컴퓨터와 통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이들 장비는 시장의 개폐에 따라 기업의 거래상황이 전세계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어느 한 지역에 소재하는 실험실이 일과종료시에 일과가 시작되는 다른 지역의 실험실에 전자형태로 프로젝트를 이 전시킴으로써 특정한 과학 프로젝트나 기술프로젝트가 하루 24시간 내내 운용될 수 있다⁸⁷⁾. 향후 이러한 형태의 범세계적 제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⁸⁸⁾.

87) O. Suris, "Behind the Wheel", *Wall Street Journal*, Nov. 18, 1996, R14.

88) C. Levin and S. Rupley, "Collaboration on Call", *PC Magazine*, Sept. 10, 1996. p.31 ; "Will Habanero be the Next Big Thing?", *Wall Street Journal*, May 30, 1996, B.6.

2) 배분의 일반원칙

범세계적 제휴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재화가 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또다른 국가에서 거래 및 배분될 때, 전체적 거래는 재화 판매에 있어서의 범세계적 제휴라고 특징지어질 수 있다. 범세계적 제휴에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소득원천의 원칙이 요구되는데 이는 발생하는 소득을 관련된 국가에 정확하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이전가격의 원칙은 재화의 생산 및 판매, 무형재의 창출 및 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⁸⁹⁾. 「Section 482」의 비용분담 규정은 특정한 범세계적 연구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데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무형재가 창출되는 경우로 국한되고 있다⁹⁰⁾.

이와는 대조적으로 글로벌 딜링에 의해 창출되는 소득은, 비록 현재 이에 대한 일반 적용규칙을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당국의 사안별 협상을 통해 배분되어 왔다⁹¹⁾. 기업이 서비스제공을 위해 범세계적 제휴를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특별한 상황에 근거한 광범위한 서비스 소득의 무차별적(arm's length) 배분을 위해 일반원칙을 고안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재무성의 규정이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이 실질적인 소득발생 요인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 서비스들이 수행되는 장소가 이로 인한 소득을 분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9) Treas. Reg. § 1. 482-1~8.

90) Treas. Reg. § 1. 482-7.

91) Intl 070-90; Notice 94-40; 1994-1 C.B. 351.

8. 세무행정 및 납세순응 관련 문제

가. 총괄

세무행정 및 납세순응의 측면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문제들뿐만 아니라 오래된 문제들의 변화까지도 유발하게 된다. 기술 혁신은 이를 취급할 실제적인 기법(technique)이 개발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본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술발전은 우리의 세무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다⁹²⁾.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필요되는 제도적 방안과 실제적 기법은 재무성이나 국세청의 일방적인 의도에 의해서는 개발되거나 시행될 수 없다. 민간부문의 참여와 국제협력이 적절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방안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아직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폭넓게 사용되는 전자화폐 또한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들에 대한 세무행정상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록 전자상거래 제도가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현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문제들은 즉각적인 대책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재무성이나 국세청이 이 제도들에 대해 좀 더 많은 경험을 취득할 때까지 그 결정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92) 이러한 발전은 또한 내국세법 Section 7201~7344의 범죄규정 및 은행 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하에서의 12 U.S.C. § 18296, 1951-1959, 및 31 U.S.C. §§ 5311-5330 등에 따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논외로 하고 있다.

나. 문제의 분류

이러한 기술발전은 다양한 세법규정하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어느 특정한 세법규정에 의거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특성의 토대하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더욱 유용한 분류수단이 되는 동시에 잠재적인 해답을 구하기도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방안은 기술에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상세히 언급될 문제들에 대한 광의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전자화폐
- ② 신원확인
- ③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록유지 및 거래확인
- ④ 중개기관 배제 및 거래정보 신고

다. 전자화폐

제5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자결제제도의 발전은 전자화폐를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전자화폐는 지칭하는 범위가 넓은 용어로서, 전자화폐제도가 그 기술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세무관계자들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도 다양하다. 시행되는 전자화폐제도의 형태에 따라서 전자화폐는 세무관계자들에게 환영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전자화폐는 현금(paper money)에 의해서 야기되는 바와 유사한 탈세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인 탈세가 관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금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던 기법들이 전자화폐를 이용한 탈세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 확대될 수

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전자화폐의 발행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자화폐의 발행인이 물리적 실질경제(physical economy)와 전자경제(electronic economy)간의 경계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자현금(electronic cash)이 문제시되는 정도는 비은행채널을 통한 결제제도의 발생 정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재무성은 ① 전자화폐를 이용한 탈세의 방지를 위해 현재의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② 새로운 세무조사기법이 필요한가 ③ 전자화폐 발행인에게 정보의 기록 및 보고와 관련되는 유사의무들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또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⁹³⁾.

1) 기록시스템

제5장에서 전자화폐제도를 기록시스템과 무기록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기록시스템에서는 전자화폐 발행인이 전자화폐의 경제내 유통에 대한 중앙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반면 무기록시스템하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시스템하에서는 그 기록이 세무조사 자료로서 이용 가능하다면 세무관계자가 특정한 납세자의 출납제도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행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기록시스템의 발전은 중앙기록(central record)이 결제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납세자나 세무조사자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 및 기타 목적에 거래기록이 필요할 때 일부의 납세자들은 기록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93) 비밀유지, 뇌물 및 뇌물정보의 폭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ection 6103을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재무성은 기록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을 세무행정 차원으로 어떻게 흡수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조세 목적으로 수용하고자 할 때 그 기록의 수용여부 결정에 적용할 표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2) 무기록시스템

기록시스템과는 대조적으로 무기록시스템하에서는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전자화폐는 현금과 유사하게 기능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무기록시스템이 기록시스템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정도에 의해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현금이 특정한 형태의 소규모 거래에 주로 사용되고 있듯이 무기록시스템 또한 특정한 형태의 소액거래에 주로 사용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결제조건이나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의 결제 메커니즘을 선호할 것이다. 또 다른 상황하에서는 전자화폐를 사용하더라도 거래 당사자와의 분쟁 시 기록보유를 위해 기록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무기록 전자화폐제도가 다른 결제제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탈세는 상당할 것이다.

무기록 전자화폐를 이용한 거래는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카드결제시스템으로 이전될 수 있는 무기록 전자화폐를 대가로 물질적인 재화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현금을 매개로 하는 영업형태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재고유동량이나 기타 유사한 물리적 징후의 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영업규모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전자형태의 재화 및 서비스 판매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수입규모에 대한 어떠한 물리적 징후도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⁹⁴⁾.

3) 은행기밀보호

마지막으로 전자화폐는 미신고소득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준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현금과 더불어서 막대한 자금을 비교적 쉽게 이전시킬 수 있는 전자화폐의 장점으로 인해 지하경제 및 무계정 경제에 대한 문제가 한층 악화될 것이다.

전자화폐와 인터넷은 은행계좌의 해외개설, 우편합회사(letterbox companies) 또는 신탁계좌의 해외개설 및 익명의 자금 이전에 있어서 용이성과 안전성을 증가시켜 준다. 지폐와는 달리 전자화폐는 세계 어느 곳으로도 안전하고도 즉각적으로 이전될 수 있다. 현재 실제로 은행이 있는 곳까지 여행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은행기밀 보호지역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⁹⁵⁾. 전자화폐는 현금 이전시 요구되는 신고의무나 위험이 제거됨에 따라 이러한 계좌로 즉각적으로 또 익명으로 이전될 수 있다. 한편 막대한 규모의 무기록 전자화폐를 암호화한 스마트카드를 현금 대신 간단하게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미국과 조세조약 또는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체결한 국가에 위치한 은행 및 금융기관에

94) 예를 들어 만약 납세자가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한 형태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면 판매자의 빈 디스크(blank disk) 구입정도로써 그의 총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전자형태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면 이는 판매시점에서 손쉽게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지표가 될 흔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95) 사용자로 하여금 Antigka의 은행에 계좌개설을 허락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 이 은행은 다양한 통화의 당좌계정 및 정기적금(time-deposit), numbered accounts, 국제전신송금,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비과세(tax protect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은행기밀이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에 요구되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 31 C.F.R. § 103. 24를 참조하기 바란다.

서는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의 은행거래 기록이나 자금이전 기록을 조회하여 입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 신원확인

『New Yorker』지에서 언젠가 “인터넷에서는 아무도 당신이 개인지 모른다(On the Internet, nobody knows you're a dog)”라는 설명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두 마리 개를 그린 삽화를 실은 적이 있었는데 세무관리자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터넷상에서는 허위신분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납세자의 신원은 수많은 조세규정에서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이 세무행정상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만약 증권이 전자형태로 구매되었다면 증권의 발행인은 그 거래정보의 신고 및 기록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구매자가 비거주외국인이거나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자 및 배당지급은 원천징수 의무대상이 된다. 만약 수익권 소유자가 조세조약의 수혜대상이라면 이러한 원천징수는 조세조약에 의해서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경비공제 청구는 피지급인과 거래에 대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Subpart F」하에서 물품구매자의 신원은 외국기반기업(foreign base company)의 판매소득 창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전자재화를 판매하는 미국의 판매자는 모기업이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구매자는 그 구매가 모기업의 국가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⁹⁶⁾. 따라서 그 구매가 정말 해당국가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납세신고서 및 기타 서류들이 전자형태로 신고될 수 있다

96) Section 954 Treas. Reg. § 1. 954-3.

면 수용할 만한 디지털 서명 형태가 필요할 것이다.

신분확인도 또한 자기와 거래하는 자의 신분이 확인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⁹⁷⁾.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신원확인에 사용될 디지털 증명서(digital certificates),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s)을 개발하고 있다⁹⁸⁾. 디지털 증명서는, 부여된 확인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적절한 배경조사를 이행하는 신용 있는 중개업자에 의해 발행된다⁹⁹⁾. 일단 개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개인은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는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은 것이다. 증명서는 공용열쇠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수취인에 의한 개별 확인과 위조 방지가 가능하다¹⁰⁰⁾.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계획대로 운용된다면 납세자나 세정관리자가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신분증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세 관련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상대방의 신원확인이나 거래정보 신고요건에 대한 순응이 필요하다면 납세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디지털 신분증 취득을 요청받을 것이며 세무조사에 사용될 수 있는 해당 신분증의 기록을

97) 예를 들어 “Digital Signatures Expected to be Necessary for Online Shopping”, *Interactive Marketing News*, Sept. 13, 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98) 그 예로서 <http://www.verisign.com>. 또한 우편 서비스는 “Electronic Postmarking Service”에서 시도되고 있다. 61 Fed. Reg. 42, 219(1996). 또한 <http://www.usps.org>를 참조하면 중앙정부는 Digital Signature Standard(DDS), 59 Fed. Reg. 26, 208(1994) 및 Secure Hash Standard(SHS), 58 Fed. Reg. 27, 712(1993)를 적용하고 있다.

99)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디지털 서명 제공자는 세 가지 상이한 수준의 증명을 제시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수준은 지정된 주소로부터 보내진 e-mail 메시지에 대한 확인이며, 다음 수준은 소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 신분확인을 통하여 디지털 신분증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장 고위수준은 증명된 디지털 신분증 신청을 위한 공증(notary public) 전에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구한다.

100) 디지털 서명의 이론적 설명은 제4장에서 논의되었다.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디지털 신분증의 발행자는 신분증 발급 전에 철저한 신원확인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디지털 신분증의 발행자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발행자를 인증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우선 디지털 신분증 발행자에게 그들 자신의 디지털 신분증을 각각 발급하고 그들이 전자형태로 국세청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무성은 디지털 신분증의 전자신고서류 서명으로의 사용 가능성, 특정한 목적에의 사용 및 디지털 신분증 발행자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의 국세청의 역할 등 조세목적에 위한 디지털 신분증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마. 기록유지 및 거래확인

납세자는 정확한 장부 및 증빙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 및 비용에 대해 확인할 때 조사대상이 되는 것들이다¹⁰¹⁾. 비록 많은 납세자들이 장부관리 전산시스템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거래정보가 전자기록의 정확성 확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서면증빙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전자재화 및 전자서비스 판매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에게 있어서는 고객의 주문이 전자형태로 요청되고 이행되며 이러한 거래의 기록은 오직 전자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증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컴퓨터 사용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산기록은 흔적 없이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탈세와 조세포탈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¹⁰²⁾. 전자재화가 아닌 물질적 재화(physical

101) Section 6001 및 Notice 96-10, 96-7 I.R.B. 47.

102) 기타 암호 수단뿐만 아니라 공용열쇠 암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기록을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행위는 서면증빙의 폐기 및 유지 불충분 등과 다름없이 취급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goods)의 판매에 종사하는 납세자들도 곧 전자형태로 주문을 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서류(electric documents)는 잠재적인 탈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 가능하게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은 또한 과세목적 이외의 문제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전자주문의 수령인은 그 주문이 적절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그 주문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신분확인에 사용되는 공용열쇠 암호화 기술은 전자서류 및 기록의 조작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전자서류 및 기록의 수정여부를 확인 가능케 해 주는 디지털 증명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디지털 기록의 내용 및 시간에 대한 확인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공증 스탬프(notary stamp)와 같은 것으로서 차후에 해당 전자기록이 거래발생시 생성된 것이며 그 이후에 수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¹⁰³⁾.

바. 중개기관 배제 및 거래정보 신고

납세신고 및 납세순응은 부분적으로 중앙기관 및 중개기관에 대

103)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은 문자 및 기하학적 요소들의 정렬에 기초하며 각각의 서류에 대해 유일한 hash value를 창출하는 소위 'one-way hashing'이라고 지칭되는 수학적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hash value는 서류제목의 삽입 및 유일 번호부여를 용이하게 하지만 원본서류의 재생산에는 사용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hash algorithm'에 의해 만들어진다(하나의 시스템을 2,228개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hash value를 사용하여 2차적인 서류를 만드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 hash value가 지역 서버에 전자형태로 이전되어 디지털 형태로 소인을 찍히고 저장되는 것이다. 모든 서류의 hash value는 검산될 수 있으며 원본과 대조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상이한 hash value를 생성하기 때문에 서류의 내용이나 소인이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http://www.surety.com>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 거래정보의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 부여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 대한 지급의 원천징수는, 납세의무를 잘 이해하고 있고 신원확인이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지칭되는 원천징수대리인(withholding agents)의 활용과, 그들을 조사할 수 있는 국세청의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개인이나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인 납세자들이 전통적인 중개기관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해외투자 및 라이선싱 거래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개기관 배제(disintermediation)는 이러한 전통적인 중개업자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이미지의 다운로드나 재생산 권리의 양도 대가로 이루어진 지급은 피이전인의 권리에 의존하는 로열티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⁰⁴⁾. 이러한 거래의 당사자는 자신들의 원천징수의무를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며 현재의 기술로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조세를 전자상태로 산정하거나 납세할 수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전자상인이나 전자소비자들에 의해 수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의 신고와 납세는 세무행정 역시 복잡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거래당사자는 자신들의 거래정보 신고 요건에도 친숙하지 못할 것이다. 정보신고는 세무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우리의 정보신고제도로 흡수통합하는 일도 필요하다.

재무성은 이러한 중개업자가 배제된 세부적인 거래에 대하여 조세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이러한 거래정보 신고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04) Section 3. 2. 4, supra.

9. 결 론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혁신이 세계경제를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휩쓸어,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에 대한 새로운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본 보고서는 통신혁명에 의해 제기되는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해 고려해 본 것이다. 어떤 사항들은 그 내용이 원칙적으로 너무 복잡하여 현행의 원칙들을 유지하면서 다루기가 어려웠다. 반면 몇몇 원칙들은 유연성을 부여하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는 계속적인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전자화폐의 사용에 따른 익명거래의 확대 등은 현재의 조세체계 및 납세순응에 대해서 새로운 수준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무성은 전자화폐 등 통신혁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이고도 강력한 조세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납세자와 그들의 세무상담자, 세법전문가, 컴퓨터 기술 전문가, 학계 및 외국의 조세정책당국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정보통신 기술과 새로운 거래 형태의 발전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간결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조세제도가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 관련된 모든 의견은 Joseph H. Guttentag, International Tax Council, Department of the Treasury, 15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220이나 인터넷상의 TAXPOLICY @treas.sprint.com의 “technology issues” 라는 주제항목으로 보내 주기 바란다.